

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. 7. 3 선고 2015가단10083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]

전 문

원고A

피고1. B마을회

2. C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5. 7. 3.

주 문

1. 원고에게,

가. 피고 B마을회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표시 1, 2, 3, 4,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(가)부분 17㎡를 철거하고,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D 전 1697㎡ 중 별지 도면 표시 1, 2, 3, 4,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(가)부분 17㎡를 인도하고,

나. 피고 C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철제파이프 비닐하우스 중 별지 도면 표시 5, 6, 7, 8, 9,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나)부분 66㎡를 철거하고,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D 전 1697㎡ 중 별지 도면 표시 1, 2, 3, 4,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(가)부분 17㎡ 및 같은 도면표시 5, 6, 7, 8, 9,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나)부분 66㎡를 인도하라.

2.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,000,000원과 2015. 4. 11.부터 위 1.항 기재 각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00,000원씩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.

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)

판사권창환

별지